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04. 1. 20자로 개정 시행됨에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보상 받은 소유자가 보상비와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나. 군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용 도모.
- 다. 자연녹지지역에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함.
- 라. 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m²이하인 기존공장 부지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부지면적이 1만m²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폭 8m미만 도로에 접속한 경우에는 일단의 부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 마.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바.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화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4-170호(2004. 5. 1)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 ·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21조제1항제1호중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입목축척량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입목본수도”는 “입목축척량”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제1항의 건축물은 규칙제1 2조 별표에서 규정한 지역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을 “영제71조제 1항제19호의 별표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부칙제13조제1항의 별표27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으로 하고, 동 조제2항을 동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9인”을 “14인”으로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다.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제21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별표16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19 제1호 사목 내지 카목을 각각 아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공장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별표19제2호 각호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을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하고, 동호 차목 본문중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하고, 동호 카목내지 파목을 각각 타목 내지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3 제1호바목 내지 자목을 각각 사목 내지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증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공장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23 제2호 각호외의 부분중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을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로 하고, 동호카 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 (농업 · 임업 · 축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4 제1호에 사목 내지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아.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자. 아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차.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지역
- 타.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 파.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
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
구역을 제외한다)
- 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하수도법에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 · 운영되
는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제56조 및 별표23제1
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2004년 1월 20일) 1년 이내에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관 계 법령 발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결정)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결정)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성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

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 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분과 위원회

-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별표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축산업용에 한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별표19 제2호 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 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가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제13조 제1항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참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1 <신 설>	<p>제16조의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 용) 영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군수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 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 상을 받은자 또는 그 포괄 승계 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 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p> <p>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p> <p>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 는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의 대지면적)〕 이내</p>

현 행	개 정 안
	<p><u>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u></p>
<p>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 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 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2. (생 략)</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p> <p>-----</p> <p>-----</p> <p>-----</p> <p>-----.</p> <p>1. <u>입목축척량 120퍼센트 이하인</u> ---. -----</p> <p>----- <u>입목축척량</u> -----</p> <p>-----.</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 <u>휴게음식점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나목</p>	<p>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① <삭제></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u>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u> <u>일반음식점, 나목 및 타목의 안</u> <u>마시술소</u></p> <p>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u>의 숙박시설</u></p> <p>②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및 영 부칙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물중 제1항의 건축물은 규칙 제 12조 별표에서 규정한 지역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24 와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② 영 제71조제1항제19호의 별표 20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영 부칙제13조제1항의 별표27 제2 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은 ----- -----.</p>
<p>제65조(분과위원회)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제65조(분과위원회)① ----- ----- ----- -----.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결정에 대한 심 의 또는 자문</p>

현 행	개 정 안
	<p><u>다.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제21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u></p> <p><u>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 제5항, 제21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u></p> <p><u>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u></p>
<p>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③ · ④ · ⑤ (생략)</p> <p>【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16호관련)</p>	<p><u><삭 제></u></p> <p>② ----- ----- 14 인 ----- ----- ----- ----- ③ · ④ · ⑤ (현행과 같음)</p> <p>【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16호관련)</p>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사. (생 략) <u>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	<u>2. ----- ----- -----</u>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u> <u>(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 <u>(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u>
자. ~ 카. (생 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p> <p>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가. ~ 바. (생 략)</p> <p><u><신 설></u></p>	<p>【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p> <p>1. ----- ----- -----</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공장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p>
<p>사. ~ 카. (생 략)</p>	<p>아. ~ 타. (현행 사목 내지 카 목과 같음)</p>
<p>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우리군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다)</p>	<p>2. ----- -----(-----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 ----- ----- --)</p>

현 행	개 정 안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 준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 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5) (생 략)	차. ----- ----- ----- ----- --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 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 하. (현행 카목 내지 파 목과 같음)
카. ~ 파. (생 략)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제13조제1 항 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제13조제1 항 관련) 1. ----- ----- -----

현 행	개 정 안
<p>가. ~ 마. (생 략)</p> <p><u><신 설></u></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19 제2호</p> <p>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공장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지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바. ~ 자. (생 략)	사. ~ 차. (현행 바목 내지 자 목과 같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하되,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안마시술소 및 숙박시설은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역 및 우리군 조례가 정 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 한다)	2. ----- -----(-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및 숙박시설은 ----- ----- ----- ----- ---) 가. ~ 차. (현행과 같음)
가. ~ 차. (생 략) <u><신 설></u>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의 참고시설 (농업 · 임업 · 축 산업 ·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 ~ 하. (생 략)	타. ~ 거. (현행 카목 내지 하 목과 같음)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 치할 수 있는 지역	【별표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 치할 수 있는 지역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사.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p>
<신 설>	<p>아.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신 설>	<p>자. 아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신 설>	<p>차.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지역</p>
<u><신 설></u>	<p>타. 유효저수량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p>
<u><신 설></u>	<p>파.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p>
<u><신 설></u>	<p>하.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p>